'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 질의응답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관련 -

(수준평가 추진 계획 관련)

- 평가항목(9p)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 '21년도 추가된 평가 지표 또는 평가지표가 강화된 지표를 강조한 표시입니다.
- 평가지표별 적용단위에서 기관단위 적용과 DB단위 적용이 무슨 의미인지?
 - → 기관단위는 기관 전체를 평가(기관 총괄담당자 평가대응), DB 단위는 DB별로 평가(DB 담당자 평가대응) 수행합니다. DB 단위 평가는 기관 내 평가 대상인 여러 DB의 평가 평균값을 최종 기관평가 점수로 적용합니다.
- 기초지자체의 경우 20년도에 '오류데이터관리 지표'만 평가했는데, 금년에는 전기관이 전체 지표에 대해서 평가받는 건지? <외 2건>
 -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기관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전체 기관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수준평가 대상DB 선정 관련)

- 표준DB 중 지자체 개별 운영DB도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 → 표준DB는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체 표준DB를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안부에서 선정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표준DB를 제외하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개별DB를 대상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평가대상DB를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해도 되는지?
 - → 전년도 평가대상DB를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해도 됩니다.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중 초과근무, 전자우편, 행정 관리 포털 등 기관 행정운영 하는 것들도 대상이 되는지?('20년에는 제외)
 - → 지원업무DB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대상DB별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품질 진단 대상 시스템은 EA에 등록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 → EA에 등록된 시스템 및 DB전수조사, 20년도 평가대상, 중앙메타정보시스템 등을 기초자료로 지난 4월 기관별 DB 보유현황 관리요청(공공데이터정책과

- -1453호, 2021.3.24.)에 따라 기관이 확인(추가·삭제·수정)한 목록이 대상입니다.
- 기관이 8월까지 존속하고 9월 이후 신설기관이면 두 경우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 → 품질관리 수준평가 및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신설기관 유무에 상관없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는 대상 DB를 고도화 및 폐기 대상이 아닌 DB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기관고유업무 40%, 지원업무30% 외에 별도 공간정보 DB는 추가 평가대상인지? <외 1건>
 - → 공간정보 DB는 현재 평가 대상DB 선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 DB 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세 계획이 배포될 예정 입니다.
- 진단대상DB등록 관련 연계성 데이터로 구성된 DB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기관에서 DB를 관리하고 있으면, 연계성 DB(연계만 있음)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DB별 업무유형 구분 관련)

- 고유업무, 지원업무, 시스템 관리업무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예:대표 홈페이지, 그룹웨어는 각각 어떤 업무인지) **<외 1건>**
 - → '21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계획'에 '붙임2. 품질관리 대상 대상 DB 및 평가대상 선정기준' 참조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기관 대표 홈페이지와 그룹웨어는 지원업무에 속합니다.
 - →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DB)이며, 지원업무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스템(DB)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면, 고유업무는 기관 간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지원업무는 대부분이 기관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 현황 등 자체관리 강화 협조 요청(공공데이터정책과-1453호, 2021.3.24.)' 문서의 '기관별 보유DB 현황관리 시스템 매뉴얼' 참조)
- 지원업무 DB는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지원업무 DB의 품질진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공데이터

정의에 따라 지원업무 DB의 데이터도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며, 같은법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는 품질관리 대상입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고유업무DB가 없으면 지원업무DB의 30%만 선정하면 되는지?
 - → 고유업무DB가 없으면 지원업무DB의 30%만 선정하면 됩니다.
- 기제출한 고유업무와 운영지원업무 구분 변경이 가능한지?
 - → '수준평가 관리서비스'의 DB선정 화면에서 기제출한 고유업무와 운영지원 업무 구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고유업무의 40%(2년주기)를 2년 후 대상DB를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지?
 - → 평가대상 DB를 매년 반드시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업무DB의 경우 가능한 2년 주기로 품질관리 수준을 진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해진 선정비율 (40%)을 초과하여 전년도에 진단한 DB에 신규진단 DB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단도구 및 솔루션 관련)

- 품질진단도구 지원은 언제 지원이 되는지와 라이선스 기간 이외에 SDQ 사용은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른 툴을 사용하려는 계획인지? <외 4건>
 - → 20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와 관련하여 품질진단도구는 6월7일부터 11월30일 까지 라이센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SDQ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상용 SW로 평가기간 동안에만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 개발한 품질진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 2건>
 - →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품질진단 기준을 준수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체 품질진단 시스템 등을 이용한 진단을 수행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품질지원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진단도구는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pc버전과 조달장터에 등록된 서버버전 의 차이점은?
 - → 기본적인 품질진단 기능은 차이가 없으나, 조달장터에 등록된 서버버전의 경우

상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할 수 있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관 자체적으로 DB품질진단 하는 것 이외에 지원하는 사항이 더 있는지?
 - → 품질진단도구는 품질진단 기능 이외에 '데이터 표준 적용율', '데이터 구조 산출물 현행화율'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공된 형식에 맞줘 현재 DB표준 및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를 입력하면, 운영중인 DB와 연결하여, '데이터 표준 적용율', '데이터 구조 산출물 현행화율'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사용 방법은 품질진단도구 배포 시 교육자료에 포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수준평가 지표별 상세 질문)

- (지표1) 시행계획 내에 품질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 → 지표1은 시행계획 내 품질관리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는 지표가 아니며, 기관의 품질관리 계획 및 그에 따른 실적(성과)를 확인·점검하는 지표 입니다.
- (지표1) 기제출한 시행계획을 추후에 보완 가능한지?(품질관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와 시행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품질관리 계획을 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 → 기 제출한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제출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표1)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품질관리 계획 수립'은 N/A로 점수가 차감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인지?
 - → 지표의 배점을 영역 내 전체 점수(32점)에 포함하지 않고 영역 전체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점수가 차감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표2) 사전협의는 행안부에 제출된 사전협의만 대상으로 하면,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건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만 평가되는 게 맞는지?
 -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1304호(2021.3.12.,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배포)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반과)로 정보화사 업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4.1. ~9.30.)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사전 협의 대상과 동일하나, 사업내용이 DB구축과 무관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표2) 예방적 품질관리 대상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인지 아니면 DB구축 사업인지?
 - → DB구축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은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지표2) 품질관리계획지표와 예방적품질관리 지표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없는지?
 - → 행정안전부로 기 제출된 자로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표3) 기존 시스템 DB 표준화하기가 어려운데, 기존 DB의 표준화율로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표준화 적용을 위해서는 운영중인 DB를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 있거나 오픈API로 개방되고 있는데이터의 경우 표준화 적용을 위해 컬럼값을 변경한다면 모든 파라메터나 쿼리를 바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 → 현재의 표준을 기 구축된 시스템 DB에 적용하여 표준화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된 DB는 해당 DB가 구축되는 시점에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 했어야 하며, 구축시점에 적용한 표준의 준수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표준화산출물은 DB구축 시 갖춰야 할 필수산출물) 기관 및 범정부 표준이 제정되기전에 DB가 구축된 경우, 해당 표준의 적용을 평가하지는 않으며, 이후 고도화및 재개발 시에는 표준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 (지표3) 상용솔루션 이용 시, 데이터표준 적용을 요구하면 가능한 건지?
 - → 상용솔루션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표3) 표준화 정의서 작성 시, 평가DB의 기관표준 및 범정부 표준반영의 기준은 일부 반영된 것도 인정 되는건지?
 - → 기관표준 및 범정부 표준반영의 기준은 일부 반영된 것도 인정됩니다.
- (지표3) 증빙자료 중 DB표준용어, 기관표준용어 차이가 무엇인지?
 - → DB표준은 DB단위로 적용되는 표준이고, 기관표준은 기관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입니다.
- (지표3) 대상DB 전체 테이블 기준이지만, 임시 백업된 테이블이나 장기간 미사용 중인 테이블의 컬럼은 제외가 가능한지?
 - → 임시 백업된 테이블이나 장기간 미사용 중인 테이블은 제외입니다.
- (지표3) 평가 이전 구축/개발된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평가 지표에 보완 필요

- → 기관 표준, 범정부 표준 제정 이전 구축된 DB(시스템)과 표준 제정 이후 구축된 DB(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준들 달리하여 평가합니다.
- (지표5) 연계데이터(DB연동, API연동,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 → 외부 혹은 내부의 다른 DB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오픈API는 연계데이터 관리에서 제외 됩니다.
- (지표8) 현업부서에 확인해 보니 작년 오류데이터들이 null일 수 밖에 없거나 해당 표기가 맞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예외사유를 작성해야 하는지?
 - →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사유로 작성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품질지원단에 문의 바랍니다.
- (지표8) 중앙에서 배포한 DB에 대한 정의서 및 정보가 있어야 값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표준DB의 경우, 선정되면, 진단기준를 포함하여 품질진단도구를 제공합니다.
- (N표10) 개방 데이터셋은 개방 중인 파일데이터를 의미하는게 맞는지?
 - → 개방 데이터셋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중인 파일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N표10) 데이터 품질진단의 '완결성진단'에 대한 상세 설명 문의
 - → 공공데이터의 오류유형 중 '글자깨짐', '공백,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의 붙임2에 세부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표11) 개방표준 데이터셋의 경우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데이터 값 차이가 발생되는데 하위기관에서도 동일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하는 건지? (도청에서 시군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 → 개방표준 데이터셋의 등록 및 관리주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며, 광역에서 취합하여 중복 등록하는 개방표준 데이터셋은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 (N표11) 개방표준 데이터셋의 정의 문의
 - → '공원정보', '화장실 정보'와 같이 여러 기자체 또는 기관이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한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공표준'을 정의한 데이터 셋을 현재 행안부에서 지정한 122종(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참조)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제공할 때 제공하는 데이터 셋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생성한 데이터셋)

(교육관련)

-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관련 질의
 - 기초지자체, 농어촌지역은 데이터, DB전문가가 부족한 SW업체가 많으며, 수도권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는 경우 원격접속이 불가능함. 컨설팅 가능한지?
 - 현업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는 전산과 DB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임. 이런 경우에 컨설팅 가능한지?
 - 품질관리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운영DB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타부서에 협조 요청도 불가능)
 -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진행할 조직 및 인원이 없습니다.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 및 유지관리업체 담당자 오프라인 교육 요청
 - 품질관리수행은 인원 확보와는 무관하게 DB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 고려 부탁드립니다.
 - 공공기관은 공무원 공공데이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함)
 - → 데이터 품질평가 및 품질관련 교육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계획 이며,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

- 1. 품질관리 기본교육(품질관리 지표설명): 6월 7일
- 2. 품질진단 기본교육(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진단방법): 6월 7일
- 3. 품질진단도구 사용법(품질진단 자체실습 방법): 6월 7일
- 4. 품질관리 실무(품질관리 개요, 데이터 오류 유형 분석 및 개선 사례): 7월 4일
- 5. (상시운영) 콜센터를 운영하여 수준평가 방법,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지역 평가 대상 기관을 모집하여, 교육을 요청할 경우, 교육교재 및 강사를 지원할 계획

(기타 질의사항)

- 수준평가 기관유형별 우수사례, 미흡사례 등 많은 사례 제공 요청
 - → 6월 중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이드에 평가지표별 적용사례 및 예시를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산출물도 없는 레거시한 시스템은 평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이드 필요
 - → 기관에서 구축한 모든 정보시스템은 산출물을 사업 종료 시 제출받아야 하며, 패키지 솔루션인 경우,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품질관리 수준평가 서비스 및 표준데이터셋 점검 서비스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중요한 내용은 공지사항이나 팝업으로 안내 요청
 - → 수준평가 시스템(gooddata.go.kr) 메인 화면에 주요 내용을 공지사항이나 팝업으로 안내하고, 기관담당자께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메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운영실태 평가 점수에 포함 되는데, 두 가지 평가를 각기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
 - →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9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같은법 22조에 따라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DB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관차원의 제공 기반 및 현황을 평가하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및 DB 단위로 운영에 따라 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 요청사항)

- 표준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파일데이터도 진단 할 수 있는 페이지 개설 요청
 - → 관련 내용을 반영한 기능개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오류율 지표의 배점 축소 필요(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오류율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 → 품질진단과 개선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 하였으며, 개선조치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오류율이므로 오류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 파일데이터 오류 조치 기준 정의할 때 표준데이터와 비표준데이터의 필드별 기준 일치와 관련된 표준안 제공 요청
 - → 개방표준데이터의 경우 항목별 진단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개 방표준데이터 이외의 데이터는 범정부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컬럼)별 용어 및 데이터형식 점검가이드를 수준평가시스템(gooddata.go.kr)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기관보유 DB 현황 자료를 NIA에서 평가하고 고유업무, 지원업무로 구분해주세요
 - → 유사한 DB라도 기관 업무성격에 따라 고유업무/지원업무가 다르게 유형이 분류될 수 있어, DB의 유형분류는 각 기관에서 기관업무특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평가범위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강도가 심하니 지표 및 항목을 대폭 통폐합해서 꼭 해야 할 것만 평가 부탁드립니다.
 - → 평가지표 및 근거자료를 검토 후 유사·중복되거나 통합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여 2020년 대비 평가지표를 54% 감축했습니다.
- 평가기준을 완화해주세요(설계단계에서 완료되었어야 하는 항목을 운영중인 DB에 적용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관련 법·제도에서 준수를 의무화한 사항으로 관련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단계에서 당연히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 평가DB개수가 많고 담당부서와 협의가 어려운 만큼 기간 연장 요청
 - → 대상DB 선정을 기한(~6.4.)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품질지원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유현황 DB에 등록되어 있는 DB정보를 기관메타에 바로 연계시키지 말아주세요. 평가기간 중에 기관메타에서 처리해야 할 건수가 증가하면 업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 → 보유현황 DB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대상 DB는 관리될 예정입니다.